

##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추승우 의원 외 29명

나. 의안번호 : 제616호

다. 제출일자 : 2019. 4. 2

라. 회부일자 : 2019. 4. 3

### 2. 주 문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간 사업대상지 승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불필요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 강력히 건의함

### 3.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를 도시미관개선, 재해대비 등의 사유로 지중설비로 변경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지난 9년간 74개사업, 1,859억원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결과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추진하고 있음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중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접수부터 검토, 사업승인 및 통보가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 간 접수 및 통보로 이루어져,

서울시는 그간 많은 예산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시급지역에 대한 우선투자는 고사하고 어느 곳이 선정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사업 미승인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적극적 의사소통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수정 동의

- 해당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별도의견 없으나” 내용 중 투자사업 기간을 최근 투자한 사항으로, 또한 금년 사업지에 대하여는 최종자료로 기재 요청

## 5. 이 송 처

가. 국 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나. 정 부 : 산업통상자원부

다. 기 관 : 한국전력공사

##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 배제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사업지 선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sup>1)</sup>」 제72조의2에 따라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에게 이를 요구하여 지하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공배전선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sup>2)</sup>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sup>3)</sup>에 의해 한국전력공사와 자치구, 서울시가 각각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생략)

2) 가공배전선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 - 240호)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 비용은 다음의 각 항에 따라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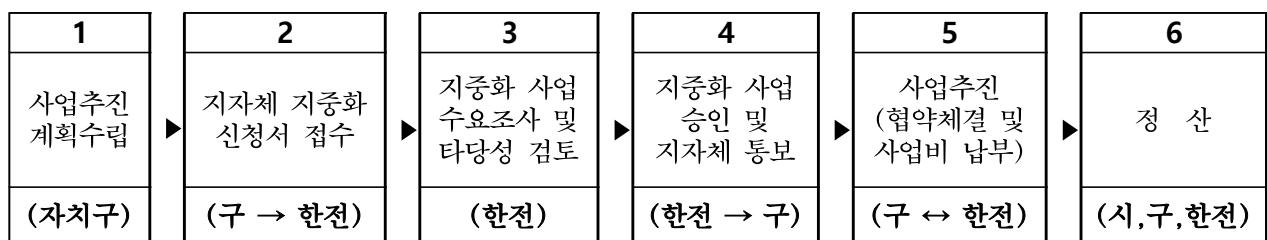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50 : 25 : 25로 나누어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재개한 '09년부터 '17년까지 74개 사업(74km)에 걸쳐 1,859억원을 투자하였고<sup>4)</sup> 올해에도 14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약 199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음<sup>5)</sup>
- 하지만, 지중화 사업이 자치구청장의 사업요청으로 시작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검토 및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어 서울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참고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절차



-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시점과 서울시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불일치하여 선정된 사업대상지를 알지 못해 서울시는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사업명	시비보조율	비고
:	:	: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	:	:

4) 2019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계획,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12739(2018.11.19.)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투입예산(백만원)	3,250	3,242	4,040	10,023	10,382	
지중화율(%)	56.35	56.91	57.59	58.18	58.94	

5) 2019년 회계연도 예산서

(단위 : 천원)

예산명	2019	비고
가공배전선 지중화	19,923,000	- 자치구 지중화사업(13개 사업) : 141억 23백만원 - 노후 주거지역 전봇대 지중화사업(홍제동 문화마을) : 58억원

자치구 후보지역 전체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금년의 경우 서울시가 예산확보 한 대상 사업지 일부가 지중화 사업에 누락되어 114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처지에 놓인 상황임<sup>6)</sup>

-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 불용을 막고 예산 분담 주체인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게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 건의안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가 대상지 선정에 관여 할 경우 지중화 사업 시급지역에 예산 편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6) 보행 정책과-514(2019.1.14.)